

의안번호	2213643
의 퇴 인	한정애의원
회 답 일	2025.11.11.
추계번호	25B5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7조의2(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사업장 규모, 소득기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업무상 재해발생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요양급여의 신청,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7조의2(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신설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속 사업장 규모, 소득기준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법 제37조제1항제2호¹⁾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업무상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요양급여의 신청,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소속 사업장 규모, 소득기준 등 지원 대상 근로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공인노무사의 지원 건수와 이에 대한 지원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소요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지원 규모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유동적이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²⁾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³⁾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면

1)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제8조의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를 지원하도록 위촉한 공인노무사를 말한다.

서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⁴⁾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assembly.go.kr

4)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지원범위	지원금액
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
도산등사실불인정	45만원
사실확인 및 대지급금 지급 1명당	6만원

자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2호